

『미국, 전동 모빌리티 디바이스용 배터리 판매, 상원 법안 154F』 심층분석 보고서

2024. 08.

TBT 통보 여부	미통보	HS Code	8506, 8507
통보국	미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4,830,124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6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4.04.18. 미국 뉴욕 주 입법부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상원 법안 154E*를 개정하여 상원 법안 154F를 발표함

* (고시일) ‘24.03.07.

- (규제요지)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공인 시험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전기 보조 장치가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또는 기타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조, 유통, 조립, 재판매,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하는 것을 금지함

TBT 통보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통보 	통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04.18.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동 모빌리티 디바이스용 배터리 판매, 상원 법안 154F Sale of Batteries for Powered Mobility Devices, Senate Bill 154F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 주 입법부 New York State Legislature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건강 및 안전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소비자 정보 제공, 라벨링 (Consumer information, labelling)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최종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07.11.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10.09.) 제정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p>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전거/페달렉, 전기 자동차 배터리 (트랙션 배터리), 리튬 이온(유형: 이차 전지, Abbrv: 리튬 이온) ▪ Automotive, Batteries, E-Bikes/Pedelecs, Electric Vehicle Batteries(Traction Batteries), Lithium-ion(Type: Secondary battery, Abbrv: Li-ion) 		
<p>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전기 보조 장치가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의 제한적 사용 또는 기타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2차 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적용 		
<p>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30,124 	<p>HS Co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06, 8507

2

개정 세부내용

□ 개정 세부내용

- 다음 비교표와 같이 섹션 1 및 섹션 495(§ 495, § 495-a)를 개정함

[표 1] 개정 세부 내용 비교

구분	S. 154E	S. 154F
섹션 1	일반 상법은 다음과 같이 읽히는 새로운 섹션 28-G를 추가하여 개정됨 제28-G조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 전기 보조 장치가 있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용 배터리	일반 상법은 다음과 같이 읽히는 새로운 섹션 28-G를 추가하여 개정됨 제28-G조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 전기 보조 장치가 있는 자전거 및 제한적 사용도의 오토바이
섹션 495	정의 495-a. 리튬이온 배터리 및 재사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판매	정의 495-a. 리튬이온 배터리 및 재사용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
§495	정의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1. "리튬 이온 배터리"는 탄산탄소 혼합물 또는 겔화된 고분자 전해질에 내장된 리튬 이온에 의해 전류가 생성되는 축전지를 의미함 2. "재사용 리튬이온 배터리(Second-use lithium-ion battery)"란 사용한 배터리에서 제거한 셀을 사용하여 조립, 재생, 수리, 재활용 또는 재생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의미함 3.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Micromobility device)"란 차량 및 교통법 제114조 e항에 정의된 전기 스쿠터, 차량 및 교통법 제114조 d항에 정의된 전동 개인용 보조 이동 장치 또는 리튬 이온 또는 기타 저장 배터리가 장착된 기타 개인 이동 장치(스케이트보드, 단륜차 또는 기타 유사한 바퀴 달린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의미함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라는 용어에는 차량 및 교통법 제102조 c항에 정의된 전기 보조 장치가 장착된 자전거, 차량 및 교통법 제130조 -a항에 정의된 휠체어 또는 기타 전기 구동 이동 보조 장치 또는 자동차부에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4. "오토바이"는 차량 및 교통법 제121조 b항에 정의된 제한적 사용 오토바이를 의미함 5. "공인 시험소(Accredited testing laboratory)"란 연방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에서 인정하는 국가 공인 시험소 또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ISO 17025 또는 ISO 17065 인증을 받은 독립 시험소를 의미함	정의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짐 1. "리튬 이온 배터리(Lithium-ion battery)"는 유기 용매 전해질과 양극 및 음극을 갖춘 충전식 배터리를 의미하며, 이는 리튬이 저장된 삽입 화합물을 사용함 2.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Second-use lithium-ion battery)"는 사용된 배터리에서 제거된 셀을 사용하여 조립, 재생, 수리, 재활용 또는 재생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의미함 3.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Micromobility device)"는 차량 및 교통법 제114조 e항에 정의된 전기 스쿠터, 차량 및 교통법 섹션 114-d에 정의된 전기 개인 보조 이동 장치 또는 리튬 이온 또는 기타 축전지가 장착된 기타 개인 이동 장치, 또는 스케이트보드, 단륜차 또는 기타 유사한 바퀴 달린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함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음 차량 및 교통법 제102조 c항에 정의된 전기 지원 기능이 있는 자전거, 차량 및 교통법 섹션 130-a에 정의된 휠체어 또는 기타 전기 구동 이동 지원 장치, 또는 자동차부에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차량임 <삭 제> 4. "공인 시험소(Accredited testing laboratory)"란 연방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국에서 인정한 국가적으로 인정된 시험소 또는 ISO 17025 또는 ISO 17065에 따라 인증 기관에서 인증한 독립 시험소를 의미함

구분	S. 154E	S. 154F
§495-a	<p>리튬 이온 배터리 및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판매</p> <p>1. (a) 개인, 회사, 파트너십, 협회 또는 법인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조, 유통, 조립, 수리,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수 없으며,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가 UL 2849, UL 2271 또는 EN 15194에 언급된 배터리 표준 또는 규정에 따라 국무부가 승인한 기타 안전 표준을 준수한다는 공인 시험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한, 차량 및 교통법 제102-c에 정의된 전기 보조 장치가 있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에 사용하기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2차 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도록 제안할 수 없음 이러한 인증 또는 해당 공인 시험 기관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이름은 제품 판매 시 포장이나 문서에 표시하거나 제품 자체에 직접 표시해야 함</p> <p>(b) 개인, 회사, 파트너십, 협회 또는 법인은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에 사용하기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가 UL 2271 또는 UL 2272 또는 규정에 따라 국무부가 승인한 기타 안전 표준을 준수한다는 공인 시험소의 인증을 받지 않은 한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2차 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조, 유통, 조립, 수리,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수 없음 이러한 인증 또는 해당 공인 시험 기관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이름은 제품 판매 시 포장 또는 문서에 표시되거나 제품 자체에 직접 표시되어야 함</p> <p>2. 이 섹션의 하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민사상 벌금을 물어야 함 (a)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 (b) 첫 번째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에 대해 후속 위반을 할 때마다 1,0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을 부과함</p> <p>3. 각각의 개별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하여 이 섹션의 하위 섹션 1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각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됨</p> <p>4. 지방 검사, 카운티 검사 및 기업 변호사는 이 섹션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며, 그러한 소송에서 얻은 모든 민사 처벌은 해당 지자체 또는 카운티가 보유함</p> <p>5. 국무부는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하여 추가로 허용되는 안전 기준을 제공하는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할 수 있음</p>	<p>리튬 이온 배터리 및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판매</p> <p>1. (a) 어떤 개인, 회사, 파트너십, 협회 또는 법인은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차량 및 교통법 섹션 102-c에 정의된 전기 보조 장치가 있는 자전거의 일부, 또는 차량 및 교통법 섹션 121-b에 정의된 제한적 용도 오토바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유통, 조립, 수리,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 임대 또는 렌트해서는 안 되는데, 단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가 UL 2849, UL 2271 또는 EN 15194에 언급된 배터리 표준 또는 규정에 따라 국무부에서 승인한 기타 안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공인 시험소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임 해당 인증이나 공인 시험소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이름은 제품 판매 시 포장이나 문서에 표시되어야 하며 제품 자체에도 직접 표시되어야 함</p> <p>(b) 어떠한 개인, 회사, 파트너십, 협회 또는 법인은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의 일부로 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대로 제조, 유통, 조립, 수리, 판매 또는 판매 제안, 임대 또는 렌트해서는 안 되는데, 단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가 UL 2271 또는 UL 2272 또는 국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승인한 기타 안전 표준을 준수하도록 공인 시험소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임 이러한 인증 또는 해당 공인 시험소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이름은 제품 판매 시 포장 또는 문서에 표시되어야 하며 제품 자체에도 직접 표시되어야 함</p> <p>2. 이 섹션의 하위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a)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 (b) 동일 범죄에 대해 첫 번째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후속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천 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p> <p>3. 이 섹션의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각각의 개별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각각의 실패는 별도의 위반을 구성함</p> <p>4. 지방 검사, 카운티 검사 및 법인 변호사는 이 섹션의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동시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소송에서 얻은 모든 민사 벌금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카운티가 보유해야 함</p> <p>5. 국무부는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재사용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추가 허용 안전 표준을 제공하는 규칙과 규정을 공포할 수 있음</p>

구분	S. 154E	S. 154F
	<p>6. 본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공공 도로, 일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유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전동 보조 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가 장착된 자전거의 운행이 차량 및 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고 전기 보조 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가 해당 법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전거의 운행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p>	<p>6. 이 섹션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공공 도로, 일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유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전기 보조 장치, 제한적 용도 오토바이 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가 장착된 자전거의 운행이 차량 및 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고 전기 보조 장치, 제한적 용도 오토바이 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가 장착된 자전거가 해당 법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전거의 운행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p>
§2	이 법은 법률이 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됨	이 법은 법률이 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됨

관련 법령 및 표준

○ 법령

- New York Senate Bill S154
- New York Senate Bill S154A
- New York Senate Bill S154B
- New York Senate Bill S154C
- New York Senate Bill S154D
- New York Senate Bill S154E
- New York Senate Bill S154F
- New York Assembly Bill 4938D
- General Business Law